

제22회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

The 22nd KOREA INTERNATIONAL TEXTILE MACHINERY EXHIBITION

2020. 3. 4수 - 3. 6일 exco



KORTEX 2020 사무국 | 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EXCO(엑스코) Tel. 053-601-5369 Fax. 053-601-5069 E-mail. kortex@exco.co.kr

참가신청서

회사명	(국문)					(영문)
대표자명	(국문)					(영문)
주 소	□□□□□					
담당자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FAX	
휴대폰	E-mail		홈페이지			
전시품목	<input type="checkbox"/> 화섬시설류 <input type="checkbox"/> 제직준비기류 <input type="checkbox"/> 제직기류 <input type="checkbox"/> 편성기류 <input type="checkbox"/> 염색가공기류 <input type="checkbox"/> 봉제 및 자수기류 <input type="checkbox"/> 부직포기류 <input type="checkbox"/> CAD/CAM 및 시험기류 <input type="checkbox"/> 공장자동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전시품목	(국문)		(영문)			
전시품상세내역	길이(cm)	넓이(cm)	높이(cm)	정하중(kg)	운전하중(kg)	

신청내역 및 금액 (□예 √표시 하십시오.)

구 분		내 역	단 가 (VAT별도)	금 액
부스	독립부스	() 부스	₩ 1,400,000 / 부스	원
	조립부스	() 부스	₩ 1,700,000 / 부스	원
	프리미엄부스A	2부스 □	₩ 4,000,000 / 부스	원
	프리미엄부스B	4부스 □	₩ 8,000,000 / 부스	원
전기	단상220V (60Hz)	() KW 24시간 □	₩ 40,000 / KW ₩ 50,000 / KW(24시간)	원
	삼상220V (60Hz)	() KW 24시간 □		
	삼상380V (60Hz)	() KW 24시간 □		
전화	국 내	() 대	₩ 70,000 / 대	원
	국 제	() 대	₩ 150,000 / 대	원
급·배수		() 개소	₩ 150,000 / 개소	원
압축공기		() 개소	₩ 150,000 / 개소	원
LAN		() PORT	₩ 100,000 / PORT	원
고객관리바코드시스템		() 대	₩ 150,000 / 대	원
소 계				원
부가가치세 (VAT)				원
합 계				원

※ 온라인 납부 : 우리은행 2632-935-4318134 (주) 엑스코

당사는 KORTEX 2020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이면수록)을 수락하고, 계약금(참가비의 50%)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KORTEX 2020 사무국 귀중

본 계약서에 날인한 상기인은 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과되었음을 보장합니다.

제22회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

The 22nd KOREA INTERNATIONAL TEXTILE MACHINERY EXHIBITION

2020. 3. 4수 - 3. 6일 exco



KORTEX 2020 사무국 | 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EXCO(엑스코) Tel. 053-601-5369 Fax. 053-601-5069 E-mail. kortex@exco.co.kr

전시회 참가규정

제 1조 (용어의정)

1.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전시회 개최와 관련 주최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EXCO'(엑스코)를 말한다
3. '전시회'라 함은 '제22회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KORTEX 2020)'을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참가비(부스비용)의 50% (부가세포함)를 계약금으로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 잔금(부스비용의 50%(부가세포함)+부대시설신청비용)은 2020년 1월17일까지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전시회 사정에 따라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액을 반려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 3조 (부스배정)

1.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순에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전시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 기간 이전에 할당된 부스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 (전시품 및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5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19.10.30까지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1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 2019.10.31부터 2019.12.31까지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3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 2020.1.1부터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제 6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8조 (장치 및 전시품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반출 후 전시자에게 해당비용을 청구한다.

제 9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전시장내의 인화물질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최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등 발생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엑스코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2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KORTEX 2020 사무국 귀중